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7. .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7. .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안대국 의원
- 발의일자 : 2019. 5. 27.
- 제 회부일자 : 2019. 6. 03.
- 검토기간 : 2019. 7. 04. ~ 2019. 7. 12.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해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주요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개재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4조)

4. 관계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5. 검토의견

-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¹⁾을 모집할 수 없으며(제1항), 또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일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위해 “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할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5조제3항)”하면서 동시에 동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5조제5항)” 규정.
- 달서구 경우,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례는 아직 없음 [☞ 입법 미비(未備)].
- 동 의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 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
 -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5조제2항제1호(즉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접수 가능)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임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위해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안 제6조제1호)를 심의·의결할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안 제6조~안 제14조)도록 규정.
 - 한편, 동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기부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증서 교부(안 제4조)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안 제5조)와 그 사후 관리(안 제15조)를 하도록 규정.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

○ 아래 3가지 관점 (① 상위법과의 관계, ② 달서구 타 조례 적용 사례, ③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에서 볼 때, 동 조례 제정은 타당(妥當)하며, 각 조문별로도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달서구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을 추가할 필요는 있음.

[예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는 상위법령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일부 규정 (예 :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만 수용(예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중)하고, 같은 상위법령의 여타 규정(예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은 불(不) 수용(예 : 해당 조례 없음)하고 행정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함.
- ② 현 달서구 입법행정 원칙 (예 :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한 경우 아래 표처럼 달서구○○○위원회 조례를 제정 · 운영하고 있음)에 비쳐 볼 때도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함.

상위법	달서구 조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금회 회부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 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③ 동일 제명의 타 지자체들 조례들과 비교해도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함.

(회부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에 대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러나 집행부는 동 조례안(특히 안 제6조)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법률 조항 삭제 및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

- 이는 현재 달서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까지 규정 않고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행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달리 보면 입법 미비상황을 해소하여 집행부 행정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그 핵심 조문을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 수정 의견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19.05.27.

2. 발의자: 안대국

※ 찬성자: 안영란, 이영빈, 박종길, 김인호, 박정환

3.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해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4조)
-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주요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4조)

5. 참고사항[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제2조(정의) 및 제5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명시된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관한 심사·의결 기능에 그치고 있으므로, 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자 예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 유
제2조(정의)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u>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심사위원회를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로 변경
제4조(기부자 관리)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3조(기부자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부서별 명단관리가 효율적이므로 조문 수정
제5조(기부자 예우)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3조(기부자 예우)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정리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택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3. 4	제6조(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u>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법률 조항 삭제 및 명칭정리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삭제 호수 번호 정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수 조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정족수 변경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